

#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74 |
|----------|----|

제출연월일 : 2003년 월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, 도지사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

## □ 주요골자
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,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라,
- 충청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4개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위탁조항을 신설함

## □ 의안전문 : 별첨

## □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##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민간위탁사무중 교통과 소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대상실과 | 일련<br>번호 | 위탁대상사무명   | 위탁대상기관  | 근거 및 적용법규  |
|------|----------|---|---|--|
| 교통과  | 12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각 협회 소관별 다음의 권한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미한 농특사항 변경신고</li> <li>·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</li> <li>· 등록사항변경신고(다만,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·양수 또는 상속 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제외)</li> <li>· 등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</li> <li>·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</li> </ul> </li> </ul> |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<br>사업협회, 충청북도개별<br>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,<br>충청북도용달화물자동차<br>운송사업협회, 충청북도<br>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<br>협회 |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<br>제3조제2항 단서<br>동법 제16조,<br>동법 제24조<br>동법 제21조제2항 |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[별표]

| 현 행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개 정 안     |       |       |   |         |  |  |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|---------|--|--|---|
| 대상 실과 | 일련 번호 | 위탁대상 사무명 | 위탁대상 기관 | 근거 및 적용법규 | 대상 실과 | 일련 번호 | 위탁대상 사무명  | 위탁대상 기관 | 근거 및 적용법규  |  |   |
|       | 1~11  | <생략>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1~11  | <한행과 같음>  |         |  |  |   |
|       |       | <신설>     |         |           | 교통과   | 12    | ○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<br>관한 각 협회 소관별<br><u>다음의 관한</u>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비한 등록사항<br/> <u>변경신고</u></li> <li>· 사업의 휴지 및 폐지<br/> <u>신고</u></li> <li>· 등록사항변경신고<br/> <u>( 다만, 등법 제14조</u><br/> <u>및 제15조의 규정에</u><br/> <u>의한 양도·양수 또는</u><br/> <u>상속신고를 포함하는</u><br/> <u>등록사항 변경신고를</u><br/> <u>제외 )</u></li> <li>· 등법 제29조의 규정에<br/> <u>의한 경영자 연수교육</u></li> <li>· 운수사업자나 화물<br/> <u>자동차의 소유자 또는</u><br/> <u>사용자에 대한 사업</u><br/> <u>등에 관한 보고서</u><br/> <u>또는 서류의 제출요청</u></li> </ul> |         | <u>총 청부도화물</u><br><u>자동차운송사업</u><br><u>협회, 충청북도</u><br><u>개별화물자동차</u><br><u>운송사업협회</u><br><u>충청북도용답</u><br><u>화물자동차</u><br><u>운송사업협회</u><br><u>충청북도화물</u><br><u>자동차운송주선</u><br><u>사업협회</u><br><u>동법 제21조</u><br><u>제2항</u><br><br><u>동법 제28조</u> |  | <u>화물자동차운수</u><br><u>사업법 제3조</u><br><u>제2항 단서</u><br><u>동법 제16조</u><br><u>동법 제24조</u><br><u>동법 제21조</u><br><u>제2항</u><br><br><u>동법 제28조</u><br><u>동법 제44조</u><br><u>제1항</u> |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95조(사무의 위임등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  
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무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  
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】

- 제3조 (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)**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 
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운송사업자"라 한다)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제16조 (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·폐지신고)**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)** 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운송주선사업자"라 한다)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24조 (준용규정)** 제4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(동조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), 제11조, 제12조(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), 제13조 내지 제16조, 제17조(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),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7조·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"운송약관"을 "운송주선약관"으로 본다.

**제28조 (경영자연수교육)** 시·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(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.)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44조 (보고·검사)**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3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